

(제150회-본회의 제3차부록)

#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14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7. 2.
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,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, 기금설치 근거법령을 변경(안 제1조)
- 나.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2항제1호)
- 다. 기금의 집행 한도를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함(안 제2조제3항)
- 라. 자활계정의 기금용도를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
  -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, 자산형성 지원,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 -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)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
  -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,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,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마. 자활기금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

(안 제7조제3항)

바. 기금운용관을 생활지원국장에서 각 계정별 담당과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폐지함(안 제9조제1항)

### 3. 개정조례안 : “따로붙임”

### 4. 근거법규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

다.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 표준 조례안(보건복지부)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2. 5. 21. ~ 6. 11(의견없음)

(제150회-본 회의 제3차부록)

#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·운용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 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1. 자활계정

2. 노인복지계정

③ 자활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.

④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.

**제3조(기금조성)**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·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
3.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4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
5.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6. 기금의 운용 수익금

②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**제4조(기금용도)** ① 자활계정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이하 “수급자”라 한다)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에 따른

(제150회-본회의 제3차부록)

##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  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
    - 나.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
  8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  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  10.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  11.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영
  12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
  13.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  2. 노인단체 지도 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  3.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
4.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
5. 노인관련 단체 및 종사자 교육

6. 노인의 자활 지원

7.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지원대상)** ①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

2.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

3.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

4.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

5.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체

②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

2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

**제6조(지원신청·변경)**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.

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

(제150회-본회의 제3차부록)

야 한다.

**제7조 (자금대여)**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 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.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·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,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④ 구청장은 시설·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

2.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

3.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,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⑥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을 준용하며,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제8조(사회보험료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4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·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,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,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9조(이차보전)**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.

- 제10조(신용보증)**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.

- 제11조(기금운용·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- 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,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#### 1. 금융회사에의 예치

(제150회-본회의 제3차부록)

2. 국채, 공채,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

**제12조(기금관리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각 계정별 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

②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**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
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**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  3.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4.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
 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-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5조(지원금 사후관리)**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

**제16조(관계규정 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규정)** 이 조례 시행전의 기금대출·상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# 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1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2. 7. 2.(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 : 2012. 7. 4.(수)
- 위원회 심사 : 2012. 7. 24.(화)

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,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용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, 기금설치 근거법령을 변경(안 제1조)
-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함  
(안 제2조제2항제1호)
- 기금의 집행 한도를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함(안 제2조제3항)
- 자활계정의 기금용도를 확대함(안 제4조제1항)
  -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, 자산형성 지원,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 -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

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)의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

-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,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,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자활기금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함(안 제7조제3항)
- 기금운용관을 생활지원국장에서 각 계정별 담당과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폐지함(안 제9조제1항)

#### 4. 검토보고(전문위원 노용주)

조례안 제2조제3항에 기금의 집행한도를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, 집행한도가 커지면 기금규모도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.

##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